

제22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아파트 작은도서관, 법으로 이야기하다

법으로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제22차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항목	시간	내용
안내	10:00~10:05	정책포럼 안내 및 진행순서 이은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상임이사
개회사	10:05~10:15	백영숙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발제	10:15~10:40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의 이해 박민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
종합토론	10:40~11:40	패널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 정원제 (주)충원종합관리 전무이사
	11:40~11:57	질의 응답
폐회	11:57~12:00	안내 및 폐회

|ㅅ|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법의 이해

박민주 정책위원장

천안 성성푸른도서관 관장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 정책위원장
천안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정책위원장
전)청주 산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전)청주 산남푸르지오작은도서관 관장
전)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정책위원장
논저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아파트 작은도서관 현황

2019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전국 사립작은도서관 5,195 개관 : 아파트 작은도서관 1,891개관(36.4%)

개인 및 민간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 1,417개관(27.3%) > 종교 시설 작은도서관 1,261개관(24.3%) >
새마을문고 356개관(6.8%) > 법인 설립 270개관(5.2%), 최근 3년간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증가율 높음.
2018년 1,727개관, 2019년 1,891개관, 164개관이 증가하였음

참고 : 2019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제3항제3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필수 설치 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참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아파트 작은도서관 특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운영주체 및 관리주체
주민공동시설 이용자 범위
재정 및 회계처리 기준

01
**공동주택
(아파트)**

아파트 사람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자생단체
공동체활성화단체
입주민

02
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 공공도서관의 범주
「도서관법 시행령」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작은도서관진흥법」 제1조(목적)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도서관 사람들

다양한 운영자 유형
-무급자원봉사자, 유급자원봉사자(실비)
-유급직원, 유급사서
-자생단체, 공동체활성화 단체
동아리 회원
이용자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정을 통해 결정됨.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1.1.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다.

1.1.2.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위탁 운영의 제안
-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 범위

도서관 관련 법

1. 공공도서관의 범주 내 작은도서관
 - 1.1. 「도서관법」제2조4항 가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됨.
2. 「도서관법」제2조4항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 2.1. "공중"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으로 순화." 국립국어원를 뜻함.
3.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조(목적)에서 '국민' 언급됨.
4. 「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하도록 명시함.

공동주택 관련 법

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
 -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 1.2.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의 복리시설
 - 1.2.1.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임.
 - 1.2.1.1.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여기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함.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민공동시설 이용자 범위
 - 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 2.1.1.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함.
 - 2.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7조의3(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재정 및 회계

도서관 관련 법

1. 「도서관법」제33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 1.1. 「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 2. 개인연구실 · 회의실 등 사용료
 -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 4. 강습 · 교육 수수료
 -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2. 「도서관법」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은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하여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동주택 관련 법

1.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 「주택법 시행령」별표 3관련 대법원 판시.
2.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주민공동시설의 수입은 **관리외수익**, 즉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됨.
 - 2.1. 작은도서관의 사용료 및 기부금 등은 아파트의 수입으로 편입된 후 사업계획서 승인 또는 예산안심의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과정에 따라 결정됨**. 즉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수입 일지라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용 못 할 수도 있음.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별대표자의 성향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며**, 그 임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2년으로(한 번만 중임, 후보자 없는 선거구 예외)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려움.
4. 아파트의 재정지원이 없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봉사자 등이 **자생단체나 공동체활성화 단체를 결성하여 지원을 요구 하기도 함**.

종합토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

정원제 (주)충원종합관리 전무이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Thank
I^H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you